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 | |
|----------|----------------------------|
| 건명 | 우명희 소유물건 (2024타경404917) |
| 의뢰인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법보좌관 신정우 |
| 감정평가서 번호 | 대한 제240930-20-0004호 |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대한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로 200-7, 3층
TEL : (033)731-2800 FAX : (033)731-2808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소재 '원주대성공영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아파트)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대상물건의 개요

| 대상물건 | |
|---|--------------------------------|
|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764 (서원대로 308) |
| 건물명 및 층·호수 | 현대아파트 202동 제3층 301호 |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 사용승인일자 | 1990.08.27 |
|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 기호 | 해당 동/층/호 | 전유면적 (㎡) | 공용면적 (㎡) | 공급면적 (㎡) | 전용률 (%) | 대지권 (㎡)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 도 |
|----|-----------|----------|----------|----------|---------|---------|--------------|
| 1 | 202/3/301 | 84.945 | 14.586 | 99.531 | 85.35 | 53.097 | 아파트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11월 06일입니다.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대상물건에 대하여 2024년 10월 01일부터 2024년 11월 06일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시 대상물건의 존재 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된 목록과 현황과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인 및 기타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가. 대상물건의 위치는 현황 점유부분 및 집합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에 의거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나.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및 내부구조(수리여부) 등 조사치 못한바 경매 진행시 별도의 확인 요
합니다.

다. 대상물건에 대한 관리비 등 체납여부는 경매 진행시 별도의 확인 바랍니다.

라. 구분소유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
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 지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평가목적)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아
래와 같이 별도 기재 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건물 배분내역

토지 : 51,900,000원

건물 : 121,100,000원

합계: 173,000,000원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의 근거 및 적용

1. 감정평가의 근거

가. 근거 법령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 |
|--|--|
| <p>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p> | <p>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p> |
| <p>제11조 [감정평가방식]</p> | <p>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p> |
| <p>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p> | <p>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p>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
|-----------------------------|--|
|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은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시장성이 높은 대상물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에 참고한 가격자료

가. 대상물건 거래사례

최근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인근지역 거래사례

| 기호 | 소재지 |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 전유면적 (㎡) | 거래시점 | 거래금액(원) | 전유면적당 단가(원/㎡) | 비고 (이용상황) |
|----|---------|------------------|----------|------------|-------------|---------------|-----------|
| | | | | 사용승인일 | | | |
| a | 명륜동 764 | 현대아파트 ***/*/** | 84.945 | 2024.08.10 | 172,000,000 | 약 2,025,000 | 아파트 |
| | | | | 1990.08.27 | | | |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정확한 동·호수는 “*”처리 하였습니다.

다. 대상물건 평가사례

최근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인근지역 평가사례

| 기호 | 소재지 | 건물명 및 동/층/호수 | 전유면적 (㎡) | 평가 목적 | 기준시점 | 평가금액(원) | 전유면적당 단가(원/㎡) | 비고 (이용상황) |
|----|---------|----------------|----------|-------|------------|-------------|---------------|-----------|
| | | | | | 사용승인일 | | | |
| ㉠ | 명륜동 764 | 현대아파트 ***/*/** | 84.945 | 경매 | 2024.08.06 | 164,000,000 | 약 1,930,000 | 아파트 |
| | | | | | 1990.08.27 | | | |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정확한 동·호수는 “*”처리 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 유형 | 부동산 가치수준 |
|--------|---|
| 유사 아파트 | 전유면적당 단가: 1,800,000원/㎡ ~ 2,000,000원/㎡ 수준임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비교사례의 선정

최근 거래된 사례 중 대상물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 기호 | 소재지 |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 전유면적 (㎡) | 거래시점 | 거래금액(원) | 전유면적당 단가(원/㎡) | 대상물건 |
|----|---------|------------------|----------|------------|-------------|---------------|------|
| | | | | 사용승인일 | | | |
| a | 명륜동 764 | 현대아파트 ***/**/*** | 84.945 | 2024.08.10 | 172,000,000 | 약 2,025,000 | 1 |
| | | | | 1990.08.27 | |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정확한 동·호수는 “*”처리 하였습니다.

나. 사정보정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치수준 대비 적정하게 거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1.00)

다. 시점수정

1) 개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한 전국아파트가격동향조사(월간동향)의 유형별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의 매매가격지수가 미고시된 경우 기준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시점수정치

| 대상 물건 | 비교 사례 | 구 분 | 거래시점 | 기준시점 |
|----------|----------|--------------------------|----------|----------|
| | | | 매매가격지수 | 매매가격지수 |
| 1 | a | 매매가격지수 (강원 원주시 (아파트)) | 2024년07월 | 2024년09월 |
| | | | 99.8 | 100.2 |

3) 시점수정치 산정

| 대상 물건 | 비교 사례 | 구 분 (산정기간) | 시점수정치 | 시점수정치 산정 |
|----------|----------|---------------------------------------|---------|--|
| 1 | a | 강원 원주시 (아파트) 2024.08.10~2024.11.06 | 1.00401 | $1 + ((100.2 - 99.8) / 99.8)$ ≒ 1.00401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 구분건물 [주거용] 본건: 1 (사례기호: a)

| 조 건 | 세부항목 | 비교치 | 검토의견 |
|--------|---|------|----------|
| 단지외부요인 |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외 폭, 구조 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풍치·경관 등) | 1.00 | 대체로 유사함. |
| 단지내부요인 |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 1.00 | 대체로 유사함. |
| 호별요인 |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 1.00 | 대체로 유사함. |
| 기타요인 |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0 | 대체로 유사함. |
| 격 차 율 | | | 1.000 |

마.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기호 | 거래사례 단가 (원/㎡) | 사정 보정 | 시점 수정 | 가치형성 요인 비교치 | 산정단가 (원/㎡) | 전유 면적 (㎡) | 산정금액 (원) | 시산가액 (원) |
|----|---------------------|----------|----------|-------------------|---------------|-----------------|-------------|-------------|
| 1 | 2,025,000 | 1.00 | 1.00401 | 1.000 | 2,033,120 | 84.945 | 172,703,378 | 173,000,000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장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시장성이 높은 대상물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 기호 | 소재지 | 건물명 동/층/호 | 전유면적 (㎡) | 대지권 (㎡) | 감정평가액(원) | 비고 (전유면적㎡당 단가) |
|-----|---------------------------|--------------------|-------------|------------|-------------|-------------------|
| 1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764 | 현대아파트 202/3/301 | 84.945 | 53.097 | 173,000,000 | 2,036,612 |
| 합 계 | | | | | 173,000,000 |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기준시점 : 2024-11-06>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및 용 도 | 용도지역 및 구 조 | 면 적 (㎡) | | 감 정 평 가 액 | 비 고 |
|------------|---|----------------------|-----------------|---|-----------------------|---------|-------------|-----------------|
| | | | | | 공 부 | 사 정 | | |
| 1 | 강원 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도로명] 강원 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308 | 764 현대아파트 202동 | 아파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 | | | |
| | | | | | 1층 | 803.699 | | |
| | | | | | 2층 | 773.279 | | |
| | | | | | 3층 | 773.279 | | |
| | | | | | 4층 | 773.279 | | |
| | | | | | 5층 | 773.279 | | |
| | | | | | 6층 | 773.279 | | |
| | | | | | 7층 | 773.279 | | |
| | | | | | 8층 | 773.279 | | |
| | | | | | 9층 | 773.279 | | |
| | | | | | 10층 | 773.279 | | |
| | | | | | 11층 | 773.279 | | |
| | | | | | 12층 | 773.279 | | |
| | | | | | 13층 | 773.279 | | |
| | | | | | 14층 | 773.279 | | |
| 15층 | 687.584 | | | | | | | |
| 지층 | 783.749 | | | | | | | |
| 1) | 동 소 | 764 | 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3층 제301호 소유권 1) ---- 대지권 | 19,260 | | | |
| | | | | | 84.945 | 84.945 | 173,000,000 | 비준가액 (전유+공용) |
| | | | | | 53.097 | | | |
| | | | | | ----- | 53.097 | | |
| | | | | | 19,260 | | | |
| 합 계 | | | | | ₩173,000,000.- | | | |
| | | | 이 | 하 | 여 | 백 | |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소재 '원주댄싱공연장'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로서, 주위는 유사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 용이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때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시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건내 3층 301호로서,
외벽 : 시멘트타일 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이기 등 마감,
바닥 : 장판깔기 및 타일깔기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창호 마감입니다.

(4) 이용상태

'아파트단위세대'로 이용중입니다.
상세 이용내역은 후면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참조.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부지'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 등

본건 주위로 아스콘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저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9-0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제일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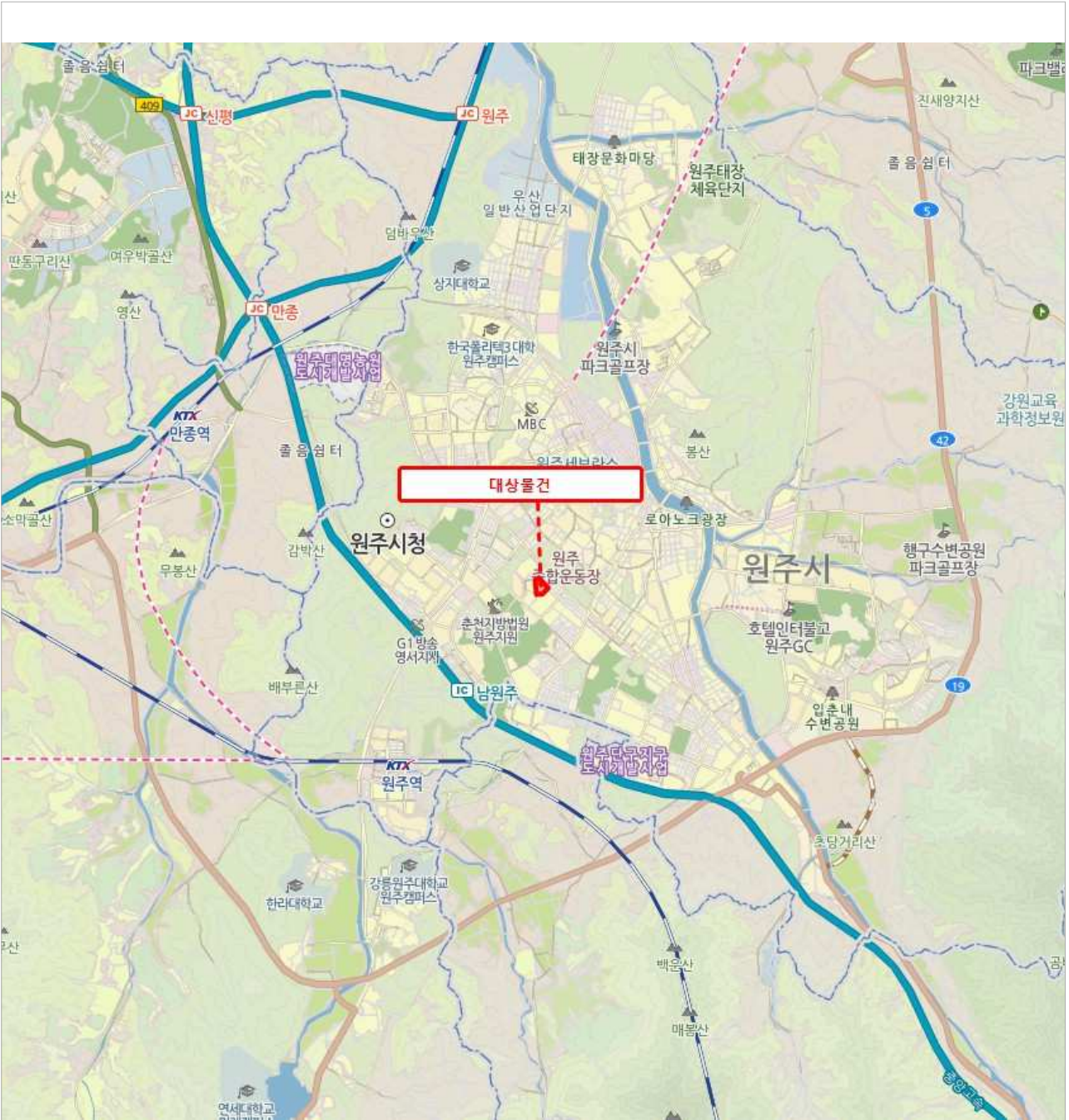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임대관계 및 내부구조(수리여부)등 조사치 못한 바 자세한 내역은 경매 진행시 별도의 확인 요합니다.

*상기 '1. 감정평가의 개요, 5. 기타검토 및 참고사항'참조.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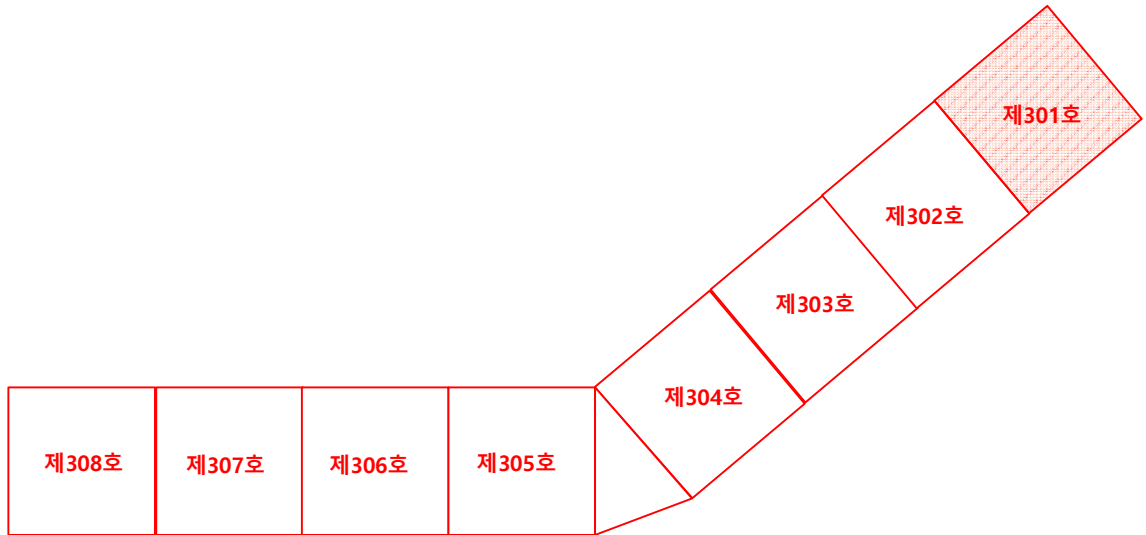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명륜동 764 현대아파트 제202동 제3층 제3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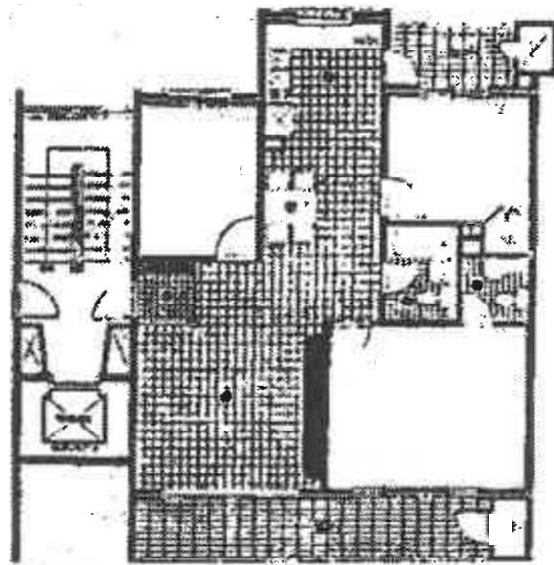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None Scale



[현대아파트 제202동 제3층 제301호]



[제3층 제301호]

사 진 용 지



현대아파트 제202동



제301호